

의안번호	제644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29 회)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4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
 - 범위확대 : 행정정보 → 정보
 - 대상기관 확대 :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지정
- 공표범위 및 목록 게시 방법 신설(안 제5조)
 - 정보공표 범위를 일부 항목에서 도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
 -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게시 의무화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정비 및 개정(안 제9조 ~ 제14조)
 - 위원장 당연직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 →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제 신설(안 제1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4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4.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의 제목 “(집행기관의 의무)”를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을 “신속하게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를 “공개대상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개대상)”을 “(정보의 공표)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사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표정보는 연 1회 이상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수시로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주요 공표목록 및 공표 주기,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행정정보”를 “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개정보의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행정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제12조·제14조·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심의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심의회 참석 위원 및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조정
2. 심의회 관련 사항
3. 공개대상기관 및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평가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u>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신 설〉</p> <p>1. “집행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p> <p>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u>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4.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공개한다.</p>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p>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내에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5. 도정의 주요 통계

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상황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도지사, 부지사, 3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6조(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사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표정보는 연 1회 이상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수시로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주요 공표목록 및 공표 주기,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구방법) ----- 공개대상기관에 -----

제7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에게 공개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② 공개정보의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도지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행정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심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 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1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 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심의회 참석 위원 및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공개대상기관 및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평가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6조(적용의 예외) ① -----

정보에 -----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17조(시행규칙) -----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삭제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